

Certificat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개인 기업)

(유효기간 2022.04.01~2023.03.31)



CONTENTS

01

온라인 자료 제출 (1 ~ 9p)

02

제출 자료 조회 (10 ~11p)

03

신청서 작성

3-1 자료제출 가능한 기업 (12 ~ 16p)

3-2 필수자료제출불가 기업 (17 ~ 23p)

04

진행 상황 보기 (24 ~25p)

05

과거 규모확인 추가절차 진행 (26~28p)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06

확인서 출력 / 수정 (29 ~ 31p)



홈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 T -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아이디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로그인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회원가입**
중소벤처24 EasyPass →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회원가입 후 STEP 1~5 사항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1.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
2.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 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절차] 추가 진행(필수)

STEP 5. 확인서 출력/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



홈 로그인 마이정보 사이트맵 중소기업24 통합로그인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클릭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공지사항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2022-02-25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2021-11-02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2021-05-04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2021-03-02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21-02-26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2021-01-19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020-09-24

자주하는 질문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 2022-01-0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2022-01-21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1-04-06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개인기업 제출자료

- 2019, 2020,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부가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원천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 2021년 소득세는 2021년 부가세로 대체하여 진행,
-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021년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담당자 명함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하여 진행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법인기업)

1
자료제출(개인기업)

제출서류목록

제출서류	자료제출방법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
<p>1. 최근 3개년 (2019, 2020, 2021) 재무제표</p> <p>2. 최근 1개년 (2021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p> <p>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지 않도록 함</p> <p>종합소득세 신고이전인 기업은 2021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2021년 재무제표를 대체하여 제출</p> <p><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우편으로 자료제출 후 사업장 주소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여 발급></p>	<p>1. 상단 메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 제출] 클릭</p> <p>2. 자료제출(개인기업) 탭 → [자료제출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p> <p>3. '자료전송 프로그램' 설치</p> <p>4.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 로 로그인</p> <p>5. 제출자료 선택 → 전송</p> <p>*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 불가</p>	<p>※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수청/기한 후 신고 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p> <p>자료전송 프로그램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새우대리인 이용가능></p> <p>※ 기업에서 직접 자료 제출하는 경우, 자료전송 프로그램에 반드시 홈박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인증서 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p> <p>작성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자료제출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발급 가능</p> <p>(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 등 제외)</p> <p>※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전절차에 따라 과거자료제출 및 과거규모 확인 위한 선택 항목을 작성해야 함</p>	<p>온라인 자료제출메뉴얼</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black;">▶ 자료제출 메뉴얼</p> <p>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5px 0;"> 2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div>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67e22;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black;">▶ 자료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p> <p>3. 위의 제출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거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제출 가능</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 5px 0;"> 3 * 전자신고파일 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 </div>

주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 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체크항목에 체크하여 신청 하도록 함

주2) 확인서 최초 발급 기업의 경우 소상공인 유예 검토를 위한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진행절차에 따라 과거

1. '자료제출 (개인기업)' 탭 클릭
2.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 하여 팝업창이 뜨면, [증빙자료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완료 후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이용자 등록 후 로그인 하여 자료제출
3. 전자신고파일 제출프로그램 수동설치
 - 자료 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가 되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수동으로 설치
 -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진행 순서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 **1**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서 온라인 자료제출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 제출하기

- 제출한 자료는 업무제출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주)의 FND System을 통해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엔 유료사항: 국세청 공백스와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최초 자료 제출시에는 제출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 (최초 프로그램 설치시에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인터넷 브라우저가 종료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보제공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직접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이용절차 및 프로그램 설치문의 ☎ 02-3215-2674 또는 [화]-[고객센터]-[미용문] (운영시간: 평일 9:00~18:00)



QuickFind 설치 마법사 시작

한국기업데이터 QuickFind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안내합니다.

결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과 국제 법령의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단 복제,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무단 복제, 배포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QuickFind 설치 폴더 선택

QuickFind를(을) 다음 폴더에 설치합니다.

이 폴더를 설치하려면 '다음'을 클릭하고, 다른 폴더에 설치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다른 폴더'를 클릭하십시오.

폴더(N): C:\WINDOWS\QUICKFIND 2.0W

3

QuickFind 설치 확인

QuickFind를(을) 컴퓨터에 설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설치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4

QuickFind 설치

QuickFind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5

QuickFind 설치 완료

QuickFind를(을) 설치했습니다.
끝내려면 '닫기'를 클릭하십시오.

Install Complete.

6

신규 파일을 다운받는 중입니다.

20222 / 138062 Byt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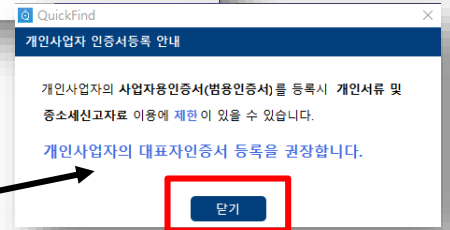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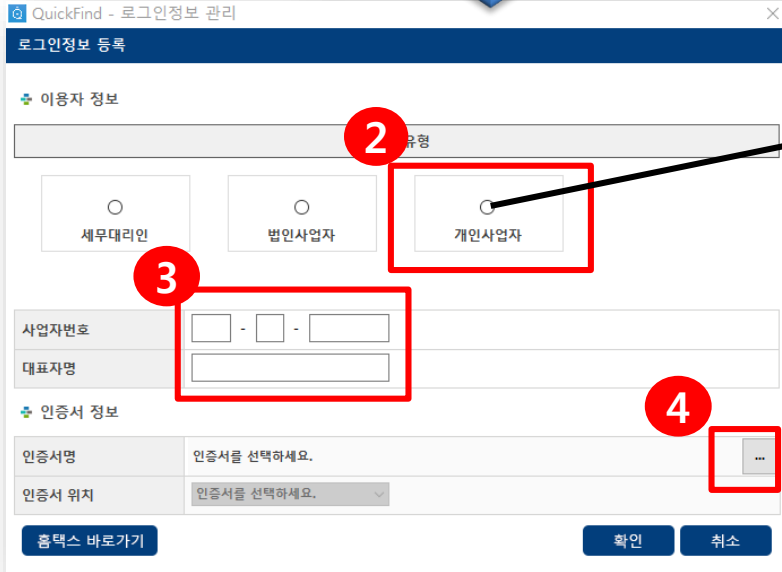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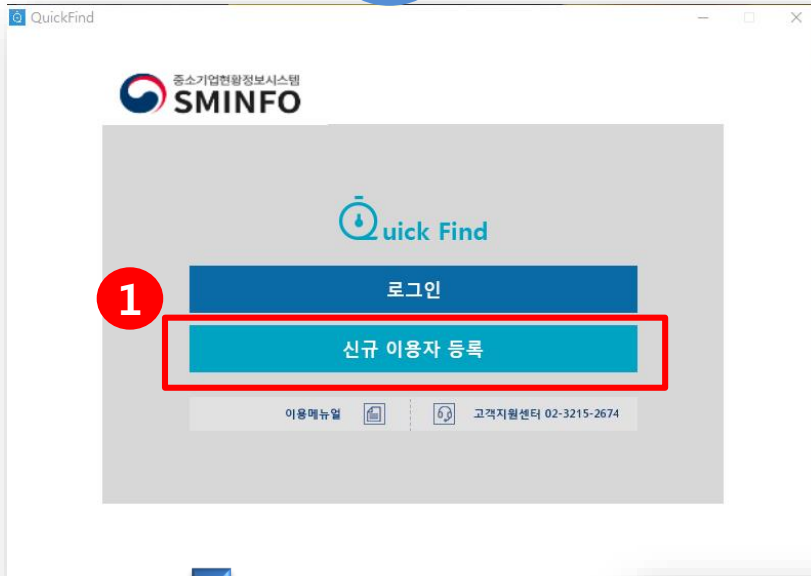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

Quick Find

로그인

신규 사용자 등록

이용가능일 | 고객지원센터 02-3215-2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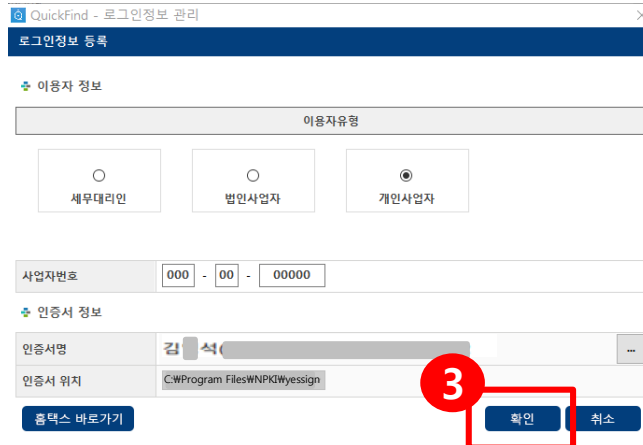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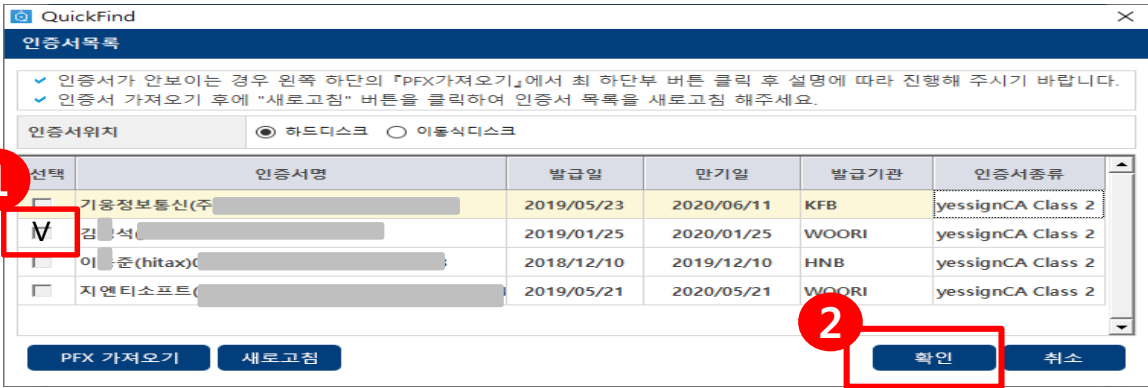
1. 신규이용자등록 선택

2. 이용자유형 [개인사업자] 선택 및 전송자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동의(필수)
 - 등록할 이용자 유형을 선택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유형별 약관동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이용자 정보 입력(신청기업)
 - 로그인 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인증서 선택
 - 인증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인증서]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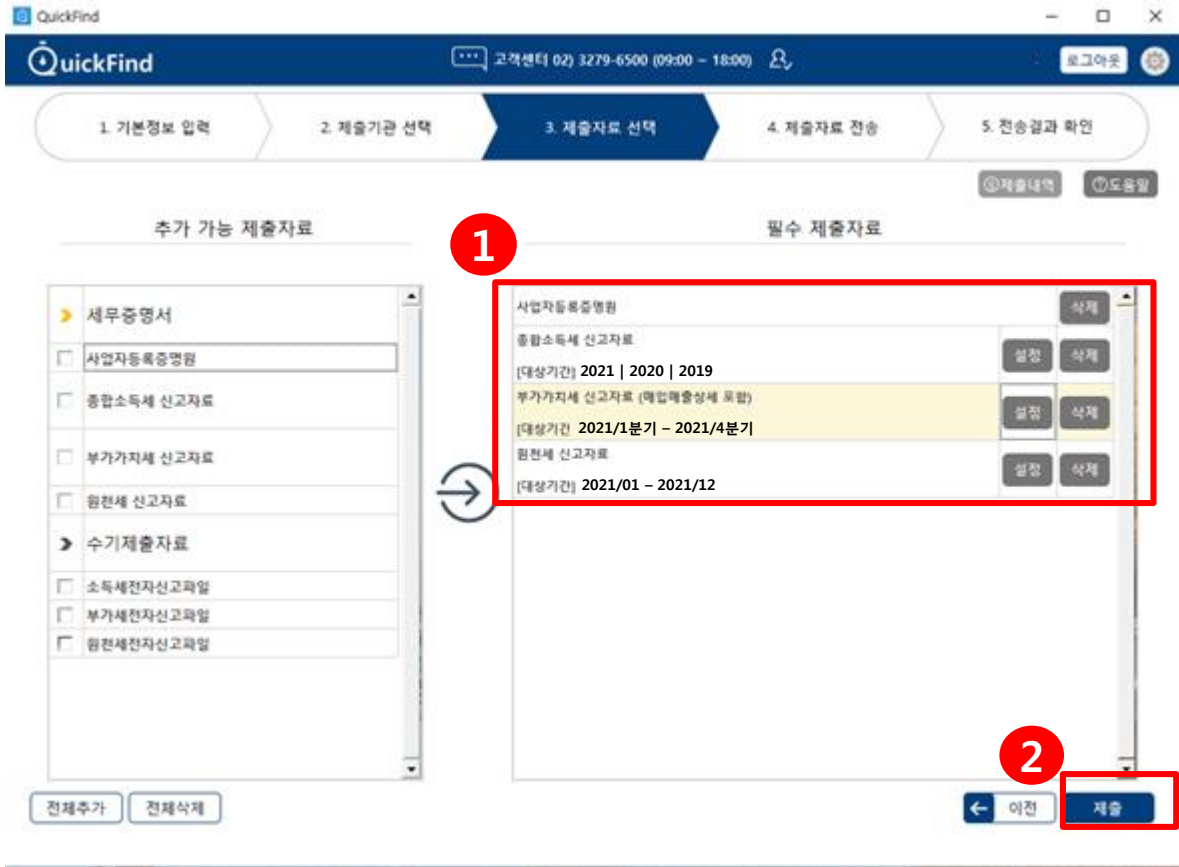
- PC에 저장되어 있는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인증서만 가능)
- 인증서가 usb 등 이동식디스크에 위치한 경우 『인증서위치』란에서 이동식디스크를 클릭 후 인증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인증서 선택하고 '확인' 클릭

3. 인증서 등록 완료 시 '확인' 클릭하여 사용자등록 완료



1. 로그인 선택
2. 로그인 정보에 기업정보 확인 후 전송자 정보 입력
 - 로그인 정보가 자동으로 출력표시 됩니다.
 - 전송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입력합니다.
3. '다음' 클릭



1. 필수자료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필수자료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기존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설정]을 클릭하여 이미 제출한 자료는 삭제하고, 나머지 자료만 제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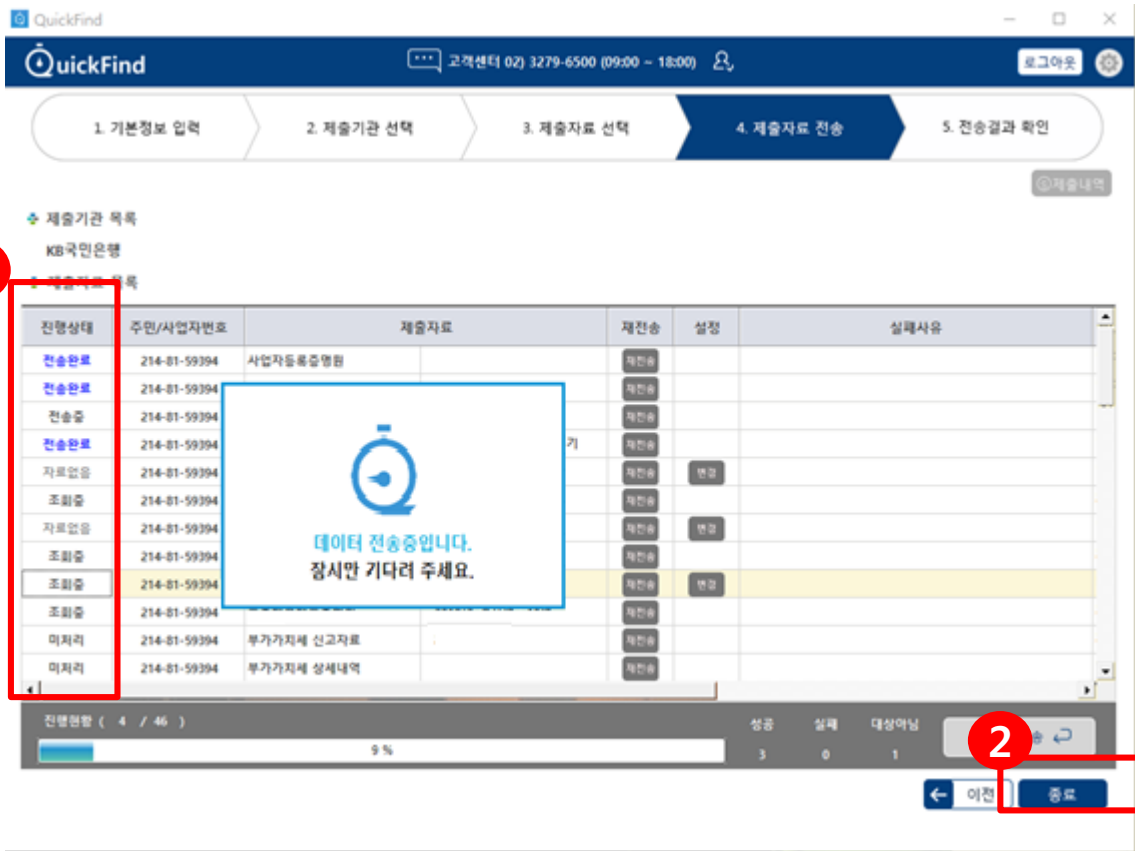
※ 자료제출 시 주의 사항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수정, 기한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

***PDF, 엑셀, jpg, zip 파일은 제출불가**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 2021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담당자 명함을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할 것.



1. 진행 상태확인

- 2021,2020,2019 소득세 신고자료와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분기~4분기), 2021년 원천세 신고자료(12개월) 분이 모두 전송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종료' 클릭

- 제출자료 전송 완료 후, [종료]버튼 클릭 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진행상태가 전송완료가 아닌 전송실패로 뜬다면 인터넷 옵션 설정 재확인 및 이용자 등록한 공동인증서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가 맞는지 재확인하여 자료 재 전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옵션 설정방법

제어판>네트워크 및 인터넷>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인터넷옵션>일반>설정>임시인터넷파일을>'웹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설정



홈 로그인 내의정보 사이트맵 중소기업24 통합로그인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 STEP 02 제출자료 조회
- STEP 03 신청서 작성
- STEP 04 진행상황 확인
-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자료 조회' 클릭

공지사항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2022-02-25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2021-11-02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2021-05-04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2021-03-02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21-02-26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2021-01-19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020-09-24

자주하는 질문 >

- 기존 담당자가 뭐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 2022-01-0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임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2022-01-21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1-04-06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 중소벤처기업부
- Ke?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 중소기업 상용 상담원 기업마당
- WORKNET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 조회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1

자료조회(온라인 제출프로그램)

자료조회 (국세청과세자료제출)

2

제출서류 조회

자료조회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법인) ▾

제출기간조회 2021-03-02 2022-03-02 검색

No	업체명	사업자번호	제출자료 기준일	제출자료명	자료제출일	제출자명	원천구분
2	힘내세요 중소기업	000-00-00000	20200101-2022013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22/02/11 11:10:18		
1	힘내세요 중소기업	000-00-00000	20200101-20201231	원천징수_전자신고	2022/02/10 19:40:35		

« < 1 > »

주1) 온라인으로 자료제출 후 시스템 반영시까지의 일정시간(10분~30분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자료조회(온라인 제출프로그램) 선택
 2. 조회할 자료 선택 및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3. 제출된 자료조회 확인
 -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 재무제표(개인,법인)
 - 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부가세매입매출상세(개인)
 - ③ 원천세 신고자료 →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법인)
- ① 자료조회 항목 [재무제표(개인, 법인)]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재무제표 자료내역이 최근 3개년(19년, 20년, 21년) 확인 → [재무제표] 버튼 클릭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수치 모두 확인
 - ② (개인사업자만) 자료조회 항목 [부가세 매입 매출 상세(개인)] 선택
 - ⇒ [검색] 버튼 클릭
 - 부가세매입 매출 상세 내역 최근 1개년('21년) 확인 必
 -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
 - ③ 자료조회 항목 [원천징수_전자신고(개인, 법인)] 선택 ⇒ [검색] 버튼 클릭
 - 조회된 원천세 자료내역이 '21.01월~21.12월(12개월) 맞는지 확인
 - [원천징수_전자신고] 버튼 클릭 → 12개월 근로자 인원 확인
- * 오프라인(우편) 제출 자료는 제출자료조회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음
* 원천세 신고자료 등의 자료가 누락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되지 못한 경우 기업(본사)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으로 서류 접수

자료제출 가능 기업 신청서 작성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클릭

공지사항 >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2022-02-25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2021-11-02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2021-05-04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2021-03-02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21-02-26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2021-01-19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020-09-24

자주하는 질문 >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호... 2022-01-0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지요? 2022-01-21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1-04-06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 의 처

신청서 작성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확인서신청 시 신청기업의 정보 및 경쟁입찰제한여부 확인서 등을 허위 또는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시스템 신청서 및 확인에 작성 입력한 사항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 자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 사택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은 시정명령 또는 취소 및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공지사항 전달 등 목적 으로서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의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국세청 과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 과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국세청 과세 정보는 중소기업 범위 판단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국세청 과세 정보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기업과세, 국세청 과세 정보 송수신 일지(로그) 등의 정보

정보주체는 국세청 과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를 수집 및 홈페이지내 공개를 합니다. 수집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확인 여부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정보 등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체동의

확인

Q :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시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를 입력하세요. 나의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이 보입니다.

A : [나의 정보]에서 기업정보 입력 후 재접속 바랍니다.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신청서 작성

*온라인자료제출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에서 제출자료완료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
 (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3개년 간편장부기업, 분할·합병, 관계기업보유 기업 제외)
 * 물음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기업명 *	<input type="text" value="힘내세요중소기업"/> <input type="text" value="대표자명"/>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기업유형 *	<input type="text" value="개인기업"/> <input type="text" value="본점사업자등록일"/> <input type="text" value="2021-01-01"/>
본점사업자번호 *	<input type="text" value="123-45-12345"/>
*고유번호입력불가	
본점사업장주소 *	<input type="text" value="07233"/> <input type="text" value="우편번호"/> <input type="text" value="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input type="text" value="힘내세요중소기업"/>
최근사업기간말	<input type="text" value="2021.12.31"/>
확인서용도 *	<input type="text" value="그이외"/>
주업종 *	<input type="text" value="I-숙박 및 음식점업"/>
2021년 발생매출액 큰업종 *	<input type="text" value="I-숙박 및 음식점업"/>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업종) * 창업기업 및 업종이 1개인 경우 위의 업종과 동일하게 선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

- 주의
- ① 폐업한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② 본점사업자 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일'
 - ③ 최근사업기간말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판단되어 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유효기간에 맞는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④ 주업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하지 않도록 함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 여부

-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
- 간편장부대상기업
 *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 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이 해당

6

저장

1.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2.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1-12-31 (고정)

3.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공공입찰용
 + 그 외/그 이외 中 선택

4. 주업종 선택 :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
 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5. 2021년 발생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 전년도 발생 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선택

6. '저장' 클릭

7. 다음 페이지 이동

※ 나머지 항목은 선택
 하지 말 것.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가족에 해당하는 개인인 친족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용도가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받는 경우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 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당일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의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다?
 예 아니요

작성일자 2022-02-26 제출자 홍길동 대표자 홍길동

이전 **저장** 다음

저장하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다음을 선택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반영됩니다.**

확인

신청자정보

1

신청자성명 *	홍길동	휴대전화번호 *	010 - 0000 - 0000
회사전화번호 *	02 - 0000 - 0000	회사팩스번호	02 - 0000 - 0000
이메일 *	cheerup2022 @ kedkorea.com	직접입력	

자료제출
방법선택 *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 직접제출(당일 제출)

*자료제출 방법은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온라인자료제출]에서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재무 및 원천세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반영하게 됨으로 자료 반영에 1영업일 이상 소요됩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 시 미 수신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빠른 발급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 직접 제출'을 선택하시고,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온라인자료제출]메뉴에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저장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사책에 참여한 경우 기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3

신청서 제출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홈 로가아웃 나의정보 사이트맵 중소벤처24 통합로그인 + T -

자료제출 불가능 기업 신청서 작성 절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신청서 작성' 클릭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2022-02-25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2021-11-02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2021-05-04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2021-03-02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21-02-26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2021-01-19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020-09-24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	2022-01-0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2022-01-21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1-04-06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성공 담당이
기업마당

WORKNET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신청서 작성

☑ 제출자료의 사실관계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확인서신청 시 신청기업의 정보 및 경쟁입찰제한여부 확인서 등을 허위 또는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 제출 (등 시스템 신청서 및 확인에 작성 입력한 사항 포함)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및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자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소기업 정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미만은 시정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 신용정보는 중소기업 여부 판단 및 공시사항 전달 등 목적 외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등 연락처 정보

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업무의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국세청 과세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 과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국세청 과세 정보는 중소기업 범위 판단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국세청 과세 정보

원천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기업과세, 국세청 과세 정보 송수신 일지(로그) 등의 정보

정보주체는 국세청 과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신청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를 수집 및 홈페이지내 공개를 합니다. 수집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정보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확인 여부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번호,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정보 등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체동의

확인

Q :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시 '나의정보에서 기업정보를 입력하세요. 나의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이 보입니다.

A : [나의 정보]에서 기업정보 입력 후 재접속 바랍니다.

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클릭

신청서 작성

*[온라인자료제출]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제출자료 조회]에서 제출자료완료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
 (직전, 당해연도 창업기업, 3개년 간편장부기업, 분할·합병, 관계기업보유 기업 제외)
 * 물음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기업명 *	<input type="text" value="힘내세요중소기업"/> <input type="text" value="대표자명 *"/> <input type="text" value="홍길동"/>
기업유형 *	<input type="text" value="개인기업"/> <input type="text" value="본점사업자등록일"/> <input type="text" value="2021-01-01"/>
본점사업자번호 *	<input type="text" value="123-45-12345"/>
*고유번호입력불가	
본점사업장주소 *	<input type="text" value="07233"/> <input type="text" value="우편번호"/> <input type="text" value="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input type="text" value="힘내세요중소기업"/>
최근사업기간말	<input type="text" value="2021.12.31"/>
확인서용도 *	<input type="text" value="그이외"/>
주업종 *	<input type="text" value="I-숙박 및 음식점업"/>
2021년 발생 매출액 큰업종 *	<input type="text" value="I-숙박 및 음식점업"/>

(직전년 매출액이 가장 큰업종) * 창업기업 및 업종이 1개인 경우 위의 업종과 동일하게 선택.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

주의

- ① 폐업한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② 본점사업자 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일'
- ③ 최근사업기간말일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판단되어 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유효기간에 맞는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④ 주업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하지 않도록 함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 간편장부대상기업**
- *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 *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신고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대표자 1인기업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등이 해당

7

저장

1. 본점사업자등록일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사업자등록일"

2. 최근사업기간말일 : 2021-12-31

3. 확인서 용도:

공공입찰용/공공입찰용 + 그 외/그 이외 중 선택

4. 주업종 선택 :

세무대리인 있다면 → 신청 기업의 '업종 대분류' 문의

세무대리인 없다면 → 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 대분류' 검색

5. 2021년 발생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

- 전년도 발생 매출액 이 가장 큰 업종 선택

6. 필수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해당여부 체크

- 간편장부 기업일 경우 : '간편장부대상기업' 체크

- 원천세 미신고 기업일 경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체크

7. 저장 후 다음 페이지 이동

신청서 작성

※ 주의사항 ※

아래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오니,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재무정보는 매출액, 자산총액, 3개년 평균매출액 등 모두를 입력하셔야 하며 입력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0' 이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도 해당 월만큼 최소한 '0' 이상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신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됩니다.

주요재무정보

(금액은 천원단위로 입력하세요.) 예시 ① 오천만원=50,000 ② 일억원=100,000

결산기준일자	2021-12-31	
매출액(천원)	1	삼천일백오십만원 31,500
자산총액(천원)	2	오억원 500,000
필요항목	매출액(천원)	
2019		3 이천만원 20,000
2020		이천사백오십만원 24,500
2021		삼천일백오십만원 31,500
평균매출액		이천오백삼십삼만삼천원 25,333

입력시 참고사항

최근 주요 재무 정보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의 매출액 참고)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초기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 입력)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등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 등
 사업기간이 3개년에 미달할 경우에는 1년 또는 2개년 매출액만을 입력

1. 매출액 :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의 매출액 참고)

2. 자산총액 : 직전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입력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초기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 입력)

<천원 단위> : 숫자 입력시 상단에 한글로 함께 표기 되니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 바람.

3. 해당하는 연도의 매출액 입력.

*주요 재무정보입력이 끝나면 페이지 하단 '근로자 현황' 입력으로 이동

근로자 현황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

다.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연평균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차감대상	연구전담요원												0	0
	임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상시근로자수는 중소기업 판단에 중요한 항목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연구전담요원', '임원'을 차감해서 산출합니다. 이 경우 차감하는 '임원'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차감합니다. 즉, 임원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 '임원'은 최근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인원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입력 대상이 아니며 대상 기업에 한하여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본점과 별도로 지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 인원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력항목은 '월' 단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되어 신고한 인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도 퇴사한 임원은 제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

그 외의 기업은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무집행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점별로 별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점 상시근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은 신청자가 직접 수기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저장** 다음

1.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인원 월별 입력:
고용한 직원을 의미하므로 '0' 입력

* 개인 기업의 경우 차감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임원은 없으므로 **대표자 본인이 대표라고 임원에 숫자 입력하지 말 것.**

2. 저장

3. 다음 페이지 이동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해당여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해당여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개인
 가족에 해당하는 개인인 친족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 면서 최대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대지분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명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 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음

* 용도가 [공공입찰용] 으로 발급받는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그 이외]인 경우는 나오지 않음.

1. 위 항목들의 해당 여부 확인하여 체크 후 "예" 클릭
2. 제출자, 대표자 이름 입력
3. 저장 클릭

(공공구매 종합정보-당일반영 조달청(나라장터)-익일 반영)

4. 다음 페이지 이동.

※ 법령 해석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추후 신청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영 제9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명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참여자격 취소 또는 징지 및 1년이하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5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 확인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의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다?
 1. 예 아니요

2. 작성일자 2022-02-26 제출자 홍길동 대표자 홍길동

3. 이전 4. 저장 다음

확인

저장하였습니다. 화면 아래쪽의 다음을 선택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입찰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당일), 나라장터(익일)반영됩니다.

신청자정보

1

신청자성명 *	홍길동	휴대전화번호 *	010 - 0000 - 0000
회사전화번호 *	02 - 0000 - 0000	회사팩스번호	02 - 0000 - 0000
이메일 *	cheerup2022 @ kedkorea.com	직접입력	

자료제출
방법선택 *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 직접제출(당일 제출)

*자료제출 방법은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온라인자료제출]에서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을 선택한 기업의 경우 재무 및 원천세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반영하게 됨으로 자료 반영에 1영업일 이상 소요됩니다.
-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 시 미 수신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빠른 발급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에는 '자료제출 프로그램 이용 직접 제출'을 선택하시고,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온라인자료제출]메뉴에서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

저장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지배·종속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서류를 누락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사책에 참여한 경우 기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3

신청서 제출

1.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 성명에 2명 이상의 사람을 입력하거나 이메일에 마침표(.) 혹은 특수문자를 입력할 경우 오류 발생하므로 입력 시 유의할 것

2. 저장

3. 신청서 제출 클릭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고객센터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STEP 02

제출자료 조회

STEP 03

신청서 작성

STEP 04

진행상황 확인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서류

'진행 상황 확인' 클릭

공지사항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2022-02-25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	2022-01-06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2021-1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2021-11-17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2021-05-04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2021-05-12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2021-03-02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2021-05-12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2021-02-26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2021-07-07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_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메뉴...	2021-01-19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2022-01-21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2020-09-24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1-04-06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기업데이터
KEDI Korea Enterprise Data

중소기업 성공 밑거름
기업마당

WORKNET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진행상황 확인

진행상황 조회

1. 진행상황이 [자료제출 확인요청] 및 [자료미제출]인 기업은 [결과보기]-[오류]확인을 통해 누락된 자료를 다시 제출 하신 뒤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조회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2.02.26	완료	중소기업여부판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완료	

2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관계기업, 직전, 당해 합병, 분할기업이 아닌 경우 자료제출 불가

※ 서울 소재 기업은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분할기업 오류' 인 경우 관련자료를 우편 접수 부탁드립니다.

※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 을 통해 관련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자료제출확인 여부 및 진행상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진행상황이 '관계기업 오류' 및 '합병, 분할 기업 오류' 인 경우 처리 절차 아래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를 클릭하여, 관련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제출

오프라인 증빙자료 제출안내

- * 관계기업, 직전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제출
- 2. 진행상황이 부적합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 3. 진행상황이 담당자 접수일 경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가 확인중인 것임
- 4. 진행상황이 '판단불가'인 경우 처리절차 '비고'란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판단불가건을 삭제처리하신 후 다시 신청서를 제작성하여 제출 (상시근로자가 연평균', 최근사업기간말일, 출자기업정보 오기제로 인한 판단불가로 나온 경우는 반드시 오기제한 정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확인서 발급됨)
- 5. 진행상황이 외국법인 오류인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내

1.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 클릭
2. 진행결과 확인

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확인

발급신청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온라인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제출하신 뒤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2022.01.21 2022.02.21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비고
2022.02.21	소상공인유예검토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1단계 과거자료제출</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재로그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2px;">오류확인</div>

온라인 자료제출

자료제출(법인기업)

자료제출(개인기업)

추가 제출서류목록(소상공인유예 검토 필요 기업)

※ '소상공인유예검토 필요' 기업이 아닌 경우 추가제출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대상 기업만 추가서류 제출)

제출서류	자료제출방법	주의사항	온라인 제출 프로그램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1. 최근 4개년전 (2018) 재무제표</div>	1. 상단 메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자료제출] 클릭 2. 자료제출(개인기업) 탭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 3.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 종합소득세/부가세/원천세 수정/기한 후 신고자료의 경우 자료제출 불가 자료제출 프로그램은 학원기업 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세무대리인 이용가능> ※ 기업에서 직접 자료제출 경우, 자료전송 프로그램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표자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메뉴얼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자료제출 메뉴얼 온라인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div>
2. 최근 2개년 전 (2020) 원천징수이월신청서 ※ 2018년 간접상부 등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의 경우 2018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우편 제출하고 사업장 주소 변경 지원증수행서(당첨으로 문의하여 발급)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기확인 결과>

a. 소상공인 유예검토 -> 당해연도 판단결과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기업인 경우에 나오는 페이지 => 과거 재무제표 있으며, 원천세 신고한 기업의 경우 과거 자료제출 이 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하여 단계별 추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1단계 과거자료제출] 클릭

2. 추가 제출서류(과거) 확인

-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 2020년 원천세 신고자료(12개월)

3.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실행) 클릭하여 과거자료 온라인 추가 제출

- 온라인 자료제출 방법은 p.3~p.9 참고

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확인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 온라인 과거자료제출 가능 기업

제출 하신 뒤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기업이 [관계기업, 직전, 당해연도 분할, 합병 자료제출]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할 경우 자료접수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2022-01-21 2022-02-21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 결과	결과보기	비고
2022-02-21	소상공인유예검토			1단계 과거자료제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5 새로고침 오류확인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팝업(개인) - Internet Explorer

https://sminfo.mss.go.kr/sc/sq/SSQ027C1.pop?pMAIdConfNo=2203020000025&pPrgStat=65&pBzno=6031751344&pbzno=6031751344&pVldPrdEdt=&pConfUs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2

1

3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저장

닫기

<중기확인 결과>

[1단계 과거자료제출]이 끝나면 [홈]-[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진행상황확인]으로 다시 이동

1.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클릭
2. 2020-12-31일 결산일자 기준 ㄱ.주업종, ㄴ.직전년 주업종 선택
3. [저장] 클릭
4. [닫기] 클릭
5. [새로 고침] 클릭

중소기업확인서

진행상황 확인

발급신청

발급절차 안내

온라인 자료제출

제출자료 조회

신청서 작성

진행상황 확인

확인서 출력/수정

발급안내 문의처

※ '소상공인유예검토' 대상 기업만 진행
 ㉞ 과거자료제출 불가능 기업
 (과거 간편장부작성 中 원천세미신고기업)

※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조회 2022.01.21 2022.02.21 검색

진행상황 결과

발급일자	진행상황	상세내용	중기확인결과	결과보기	비고
------	------	------	--------	------	----

2022.02.21 소상공인유예검토

1단계 과거자료제출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새로고침

오류확인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팝업(개인) - Chrome

tsmba.cretop.com/sc/sq/SSQ027C1.pop?pMAlidConfNo=2202260000016&pPrgStat=65&pBzno=5611700274&bzno=5611700274&pVldPrdEddt=&pConfIdUsgCd=90&pAcc...

2 신청기업의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4 닫기

7. 주업종, 8. 직전년 주업종,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10.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11. 당기매출액(천원), 12. 전기매출액(천원), 13. 전전기매출액(천원), 14. 자산총액(천원), 15. 상시근로자 수

3 저장

<중기확인 결과>

C. 소상공인 유예검토 -> 당해연도 판단결과
 => 과거 재무제표 없고(간편장부대상), 원천세 미신고한 기업의 경우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부터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2단계 과거 규모확인 선택사항 입력] 클릭
2. 2020-12-31일 결산일자 기준 7.주업종, 8.직전년 주업종 선택 후
 9.'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여' 체크
 10.'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여' 체크 하고,
 11.당기매출액, 전기매출액, 전전기매출액, 12.자산총액, 13.상시근로자 수 등
 수기 입력
 * 입력방법은 ? 참조 / 창업기업 여부는 자동 체크됨

3. [저장] 클릭
4. [닫기] 클릭
5. [새로고침] 클릭



홈 로그인 나의정보 사이트맵 중소기업24 통합로그인 + T -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고객센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시스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회원정보수정

중소기업 범위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는 자료제출 → 신청서 작성 · 제출 순입니다. 반드시 STEP 01 ~ STEP 05 순서로 클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STEP 01 온라인 자료제출
- STEP 02 제출자료 조회
- STEP 03 신청서 작성
- STEP 04 진행상황 확인
- STEP 05 확인서 출력/수정

챗봇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공지사항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2.02.26일 (토) am 7시 ~ 2...
- ☆☆☆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1.16(화) 19...
- ★★ 서비스 점검 안내 2021.10.29(금) pm 20시 ~ 202...
-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
-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
- 2021년 중소기업확인서 [전자신고파일 제작 이용 매뉴...
- ★★ 긴급공지 ★★ 1357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자주하는

- 기존 담당자가 퇴사 했구요. 사용하던 아이디는 비밀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 ...
- 나라장터에 중소기업 공공입찰 참여 하려고 하는 기업입...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
- 유효기간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 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오후 12:00 ~ 13:00

중소기업범위 해설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

- 일반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온라인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 02-3215-2674

중소기업확인서 신청서 작성 및 법령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화번호 및 주소 안내 ➡

관련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장터 1번가
- 중소벤처기업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는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사업 이것이 궁금해요 #알려줘_중기씨
-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기업데이터 Korea Enterprise Data
- 중소기업 성공 밑거름 기업마당
- WORKNET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 안내 +
- 온라인 자료제출
- 제출자료 조회
- 신청서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발급안내 문의처

확인서 출력 / 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21-02-26 2022-02-26 검색

조회결과

1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02-26	0010-2022-959	2022-04-01~2023-03-31	소상공인

1 < > >>

- 확인서 수정
- 국문확인서 출력**
- 영문확인서 출력
-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

확인서수정

중소기업확인서의 용도를 [공공기관인척 이외의 용도]로 발급하시는 경우 나라장터(조달청) 및 공공구... 발급 정보가 연계되지 않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발급번호 : 0010-2022-959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힘내세요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 123-45-12345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홍길동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힘내세요중소기업
 유효기간 : 2022-04-01 ~ 2023-03-31
 용도 :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0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4

4

1. 발급된 확인서 선택
2.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영문 확인서 사용을 원하면 확인서 수정에서 영문 정보 입력 후 '영문확인서 출력' 클릭
3. 팝업창에서 확인서 확인
4. 확인서 인쇄하여 사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발급절차안내 +
-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
- 신청서작성
- 진행상황확인
- 확인서출력/수정**
- 발급안내문의처

확인서 출력 / 수정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및 발급용도를 수정 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를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2-6974-1322)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조회

기간조회 2021-02-26 2022-02-26 검색

조회결과

1	선택	발급일자	발급번호	유효기간	확인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22-02-26	0010-2022-959	2022-04-01~2023-03-31	소상공인

<< < 1 > >>

2 **확인서 수정** 국문확인서 출력 영문확인서 출력 공공입찰용으로 용도변경

확인서수정

3 **확인서 변경 후**

기업명: 힘내세요중소기업

대표자명: 홍길동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힘내세요중소기업 우편번호

지점사업자번호: [직접입력]

지점사업자주소: [직접입력]

용도: 전매등일

확인서지정표기여부: 예 부

영문확인서여부: 예 부

영문기업명: [입력란]

영문대표자명: [입력란]

영문주소: [입력란]

영문지점사업자주소: [입력란]

4 저장

※ 수정 가능한 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확인서 용도, 지점표기 여부. 영문확인서 여부

1. 수정할 확인서 선택
2. 확인서 수정 출력 클릭
3. '확인서 변경 후' 부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수정
4. 저장
5.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수정하였으면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Fax : 02-6974-1322

THANK
YOU